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2022. 8.

식품의약품안전처
감 사 담 당 관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목적

○ **성과견인형 컨설팅 감사**[1]로 **성과 점검**과 **책임성 제고**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소관 업무 전체**

- **대상 국(局) 현황**: 5개 부서, 현원 50명, 예산 147억 원

○ **감사범위**: 2019. 1. 1. ~ 2022. 4. 30. 간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 **예비감사**: 2022. 5. 25. ~ 27.(3일)
실지감사: 2022. 6. 9. ~ 15.(5일)

○ **감사인원**: 감사단장(감사담당관) 등 6명

□ 감사중점

○ 부서별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소극행정 등 **취약분야 예방감사**

○ **예산집행, 업무추진 기준·절차**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 제시**

○ **적극행정 면책**과 **모범사례 발굴**

□ 감사결과

합 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건	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징계		경고		주의		회수(시정)		환급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금액	건	금액
3	18						2					1	18				

1)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훈령 제144호, 2019. 6. 28.),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감사담당관-331호, 2022. 1. 19.)

Ⅱ 개별처분요구

통보·주의

제 목 수입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지정·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포수입식품검사소, 광주수입식품검사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내 용

1. 업무개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수입식품 등의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시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며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2]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위 부서는 수입식품 등의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방청이 수행하는 수입검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2) 2021. 6. 30.「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업무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부서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청은 위 시스템이 자동 분류하여 지정하는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검사[3]를 실시하고, 영업자가 위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을 무분별하게 자진취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취하 후 같은 지방청 또는 다른 지방청에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청은 수입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최초 지정된 것과 같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년 수입식품 등 특정감사(본부 자체감사)에서 위 부서[4]는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자진취하한 후 재신고 시에 지방청이 검사종류를 지정하는 기준과 수입신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등 8개 부서[5]는 최초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1건 이상 수입신고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위 부서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을 포함한 「수입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각 지방청에 시달하고, 2017. 3. 23.부터 동일 화물관리번호에 동일제품의 수입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서 접수시점에 위 시스템에서 자동팝업창이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

3) 무작위표본검사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 수입식품 중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수입건수의 약 5% 수준 검사)

4) 2016년 특정감사 시 수입식품 등 검사업무는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에서 총괄하였으며, 2017년 3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신설된 이후로 해당 업무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신항수입식품검사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의왕수입식품검사소,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2020. 3. 23.부터 시스템 검토결과 화면에 '동일제품명 동일 화물관리번호로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각 지방청의 수입검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매뉴얼」을 통해 확인방법과 절차 등을 알리고 있었다.

따라서 위 부서는 영업자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을 자진취하한 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각 지방청이 수입신고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입신고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지방청이 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 처리한 지방청에 대하여 관련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등 7개 부서[6]가 2019. 1. 1.부터 2022. 4. 30.까지 [별표] '자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재수입신고 수입식품 등의 처리내역'과 같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수입식품 등을 영업자가 자진취하한 후 다시 수입신고한 제품 총 16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2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를 처리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포수입식품검사소, 광주수입식품검사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그 결과 위 16건의 수입식품 등이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유통되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은 영업자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을 자진취하한 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속 수입식품검사소가 수입신고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입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 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에 대하여 관련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광주수입식품검사소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장은 각각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재신고 수입식품 등의 검사종류 지정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니, 「수입식품 등 검사계획」 및 「수입식품 검사매뉴얼」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의 검사종류 지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서기	○○○
〃		식품위생주사보	○○○
〃		식품위생주사	○○○
〃		식품위생주사	○○○
〃		수의주사	○○○
〃		식품위생주사	○○○
〃		수의사무관	○○○
〃		식품위생사무관	○○○
〃	과장	기술서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식품위생주사보	○○○
〃	소장	수의사무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전문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식품위생주사	○○○
〃	소장	식품위생사무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식품위생주사	○○○
〃	소장	식품위생사무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사무운영주사보	○○○
〃	소장	행정사무관	○○○

[관련자 주의조치 사유]

연번	직급 (직위)	행위당시소속	성명	담당업무 (업무기간)	수입식품 등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건수	비고
1	식품위생 서기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20. 9. 7 ~ 2022. 7. 5 현재)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3건**	담당자 **(주의)**
2	식품위생 주사보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8. 7. 23 ~ 2022. 3. 7)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3	식품위생 주사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8. 4. 1 ~ 2020. 4. 5)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2건**	담당자 **(주의)**
4	식품위생 주사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21. 3. 22 ~ 2022. 2. 13)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5	수의주사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9. 1. 1 ~ 2019. 8. 18)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6	식품위생 주사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8. 10. 4 ~ 2022. 7. 5 현재)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2건**	직근상급자 **(주의)**
7	수의 사무관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7. 9. 30 ~ 2021. 7. 19)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직근상급자 (전결권자) **(주의)**
8	식품위생 사무관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9. 3. 4 ~ 2021. 6. 22)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8건**	직근상급자 (전결권자) **(주의)**
9	기술 서기관 (과장)	경인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20. 8. 31 ~ 2021. 9. 7)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결재권자 **(주의)**
10	식품위생 주사보	경인청 광주검사소	○○○	수입신고 (2021. 6. 28 ~ 2022. 7. 5 현재)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11	수의 사무관	경인청 광주검사소	○○○	수입신고 (2020. 4. 6 ~ 2022. 3. 6)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결재권자 **(주의)**
12	식품위생 전문관	부산청 수입관리과	○○○	수입신고 (2019. 8. 19 ~ 2021. 8. 30)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직근상급자 (전결권자) **(주의)**
13	식품위생 주사	부산청 자성대검사소	○○○	수입신고 (2019. 8. 31 ~ 2022. 4. 30)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연번	직급 (직위)	행위당시소속	성명	담당업무 (업무기간)	수입식품 등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건수	비고
14	식품위생 사무관	부산청 자성대검사소	○○○	수입신고 (2020. 8. 31 ~ 2022. 4. 30)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결재권자 **(주의)**
15	식품위생 주사	부산청 감천항검사소	○○○	수입신고 (2020. 8. 30 ~ 2022. 4. 30)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16	식품위생 사무관	부산청 감천항검사소	○○○	수입신고 (2020. 8. 30 ~ 2022. 4. 30)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결재권자 **(주의)**
17	사무운영 주사보	대전청 천안검사소	○○○	수입신고 (2021. 8. 30 ~ 2022. 7. 5 현재)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담당자 **(주의)**
18	행정 사무관	대전청 천안검사소	○○○	수입신고 (2020. 9. 16 ~ 2022. 7. 5 현재)	▶ 재수입신고 시 검사종류 지정 부적정 총 16건 중 **1건**	결재권자 **(주의)**

[별표] 자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재수입신고 수입식품 등의 처리내역

구분	제품명	종전 수입신고					취하 후 재수입신고			
		신고일	접수 번호	접수 부서	검사종류	취하사유	신고일	접수 번호	접수 (처리) 부서	검사종류
1	○○○	2019. 4. 15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19. 4. 16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2	○○○	2019. 4. 15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19. 4. 17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3	○○○	2019. 5. 24	○○○	경인청 인천공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19. 5. 27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4	○○○	2019. 9. 3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19. 9. 6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5	○○○	2019. 9. 27	○○○	부산청 신선대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19. 9. 30	○○○	부산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6	○○○	2021. 1. 27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1. 29	○○○	경인청 수입 관리과	현장검사
7	○○○	2021. 2. 16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2. 19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8	○○○	2021. 4. 7	○○○	경인청 인천공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4. 8	○○○	경인청 김포 검사소	서류검사
9	○○○	2021. 4. 19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4. 20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10	○○○	2021. 5. 20	○○○	광주청 군산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5. 21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11	○○○	2021. 5. 25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5. 26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12	○○○	2021. 8. 5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8. 17	○○○	경인청 광주 검사소	서류검사
13	○○○	2021. 10. 5	○○○	부산청 신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10. 21	○○○	대전청 천안 검사소	서류검사
14	○○○	2021. 11. 26	○○○	경인청 인천항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1. 11. 29	○○○	경인청 수입 관리과	서류검사
15	○○○	2021. 1. 14	○○○	부산청 신선대 검사소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2. 1. 18	○○○	부산청 자성대 검사소	서류검사
16	○○○	2022. 3. 29	○○○	부산청 수입 관리과	무작위 표본검사	보관창고 이전	2022. 3. 29	○○○	부산청 감천항 검사소	서류검사

자료: 수감기관 자료 재구성

통 보

제 목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수입중단 조치 시 일부 수산물 적용 누락**

관 계 부 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내 용

1. 업무개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같은 국 현지실사과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당 식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의 신고·검사 업무의 세부 처리요령을 정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수산물'은 수산동·식물로서 조류와 기타 수산동물(식용자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등의 신고처리와 위해우려제품의 수입중단 조치 등의 업무는 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위 시스템에서 모든 원료성 식품인 농·축·수산물을 [표]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식품원료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해당 수입식품 등을 수입중단 하는 경우 위 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 화면에서 해당 업소의 일괄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자 하는 식품종류[7]를 선택(Check)하면 해당품목들은 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중단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원료 분류체계

식품원료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품 목	비 고[1]
식물성 원료	과일류	-	감귤류, 열대 과일류 등	감귤, 오렌지, 망고 등	
	채소류	-	엽채류, 근채류 등	갓, 겨자채, 당근, 더덕 등	
	조류	-	해조류	**스피노잠**, 김, 다시마, 미역 등	**미적용**
			기타 조류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등	
	이외 곡류, 버섯류, 두류 등 총 12개 대분류				
동물성 원료	축산물	-	식육류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우유류	우유, 산양유 등	
			알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수산물	어류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붕어, 연어, 뱀장어, 갈치 등	**적용**
		-	어란류	명태알, 연어알 등	
		무척추 동물	갑각류, 연체류, 피낭류 등	게, 굴, 오징어, 멍게 등	
	기타 동물	-	파충류 및 양서류	**식용자라**, 식용개구리 등	**미적용**
			-	식용달팽이 등	
			곤충류	메뚜기, 식용누에 등	

주: 1.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에서 일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시 적용 여부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원료 분류표 재구성

따라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현지실사과가 특정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수입중단 조치하기 위해 위 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 화면에서

7)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의 해외제조업소를 특정하면 일괄 수입중단 조치대상 품목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품목류는 '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수산물'로 구분되어 있어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해당 업소의 일괄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자 하는 식품종류를 ‘수산물’로 선택(Check)하는 경우 조류와 기타 수산동물(식용자라)을 포함한 수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이 자동적으로 수입중단 처리되도록 위 시스템의 품목 분류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는 2020. 3. 23. 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위 시스템에서 수입수산물 신고·검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조류와 기타 수산동물(식용자라)을 ‘수산물’로 분류하였으나, 위 시스템에서 해외제조업소의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위 [표]의 대분류 중 ‘수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어류, 어란류, 갑각류 등)만 수입중단 처리되도록 설계하였고 [별표]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시에 적용되지 않는 수산물 품목’과 같이 조류 60개와 식용자라 3개의 품목이 각각 수입중단 조치대상에서 누락된 채 2022. 6. 15. 감사일 현재까지 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현지실사과가 2020. 4. 17. 현지실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미이행한 해외제조업소가 생산하는 수산물을 위 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캡쳐화면과 같이 수입중단 조치하였는데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에 수입신고된 위 업소에서 생산한 해조류가 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중단 되지 않은 채 2021. 8. 30. 수입검사를 받고 그대로 수입되었다.

[그림]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대장' 화면



자료: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 상세정보 화면 캡쳐

조치할 사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은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해외제조업소 대장'에서 해외제조업소의 '수산물'을 수입중단 조치하는 경우 조류 60개와 식용자라 3개의 품목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 품목이 제대로 수입중단 처리되도록 위 시스템의 수산물 품목 적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시에 적용되지 않는 수산물 품목

구분	품목명	품목명(영문)	품목코드
식물성 (조류)	갈래곰보(건조)	DRIED SEAWEED PAPULOSA	A1100100000000010000
	갈래곰보(냉동)	FROZEN SEAWEED PAPULOSA	A1100100000000020000
	갈래곰보(염장)	SALTED SEAWEED PAPULOSA	A1100100000000050000
	김(구운)	ROASTED LAVER	A1100400000000000008
	김(구운,세절)	ROASTED SLICE LAVER	A1100400000000000057
	김(건조)	DRIED LAVER	A1100400000000010000
	김(냉동)	FROZEN LAVER	A1100400000000020000
	김(냉장)	FRESH LAVER	A1100400000000040000
	꼬시래기(건조)	DRIED SEA STRING	A1100500000000010000
	꼬시래기(염장)	SALTED SEA STRING	A1100500000000050000
	다시마(건조)	DRIED SEA TANGLE	A1100600000000010000
	다시마(절단,건조)	DRIED SEA TANGLE CUTTED	A1100600000000010038
	다시마(냉동)	FROZEN SEA TANGLE	A1100600000000020000
	다시마(자숙,냉동)	FROZEN COOKED SEAWEED KELP	A1100600000000020029
	다시마(염장)	SALTED SEA TANGLE	A1100600000000050000
	다시마(절단,염장)	SALTED SEA TANGLE CUTTED	A1100600000000050038
	돌가사리(건조)	DRIED SEAWEED TENELLA	A1100700000000010000
	돌가사리(염장)	SALTED SEAWEED TENELLA	A1100700000000050000
	모자반(건조)	DRIED GULF WEED	A1101100000000010000
	모자반(염장)	SALTED GULF WEED	A1101100000000050000
	미역(건조)	DRIED SEA MUSTARD	A1101200000000010000
	미역(절단,건조)	DRIED SEA MUSTARD CUTTED	A1101200000000010038
	미역(줄기,건조)	DRIED SEA MUSTARD	A1101200000000015800
	미역(귀,건조)	DRIED SEA MUSTARD (SPORE LEAF)	A1101200000000017100
	미역(냉동)	FROZEN SEA MUSTARD	A1101200000000020000
	미역(귀,냉동)	FROZEN SEA MUSTARD (SPORE LEAF)	A1101200000000027100
	미역(냉장)	FRESH SEA MUSTARD	A1101200000000040000
	미역(염장)	SALTED SEA MUSTARD	A1101200000000050000
	미역(줄기,염장)	SALTED SEA MUSTARD	A1101200000000055800
	미역(귀,염장)	SALTED SEA MUSTARD (SPORE LEAF)	A1101200000000057100
	불등가사리(건조)	DRIED SEAWEED FURCATA	A1101300000000010000

구분	품목명	품목명(영문)	품목코드
	우뭇가사리(건조)	DRIED SEAWEED GELIDIUM	A1101600000000010000
	진두발(건조)	DRIED IRISH MOSS	A1101700000000010000
	청각(건조)	DRIED SEA STAGHORN	A1101800000000010000
	청각(냉장)	FRESH SEA STAGHORN	A1101800000000040000
	클로렐라(건조)	DRIED CHLORELLA	A1101900000000010000
	톳(건조)	DRIED SEAWEED FUSIFORME	A1102000000000010000
	톳(자숙,건조)	DRIED BOILED SEAWEED FUSIFORME	A1102000000000010029
	파래(건조)	DRIED GREEN LAVER	A1102100000000010000
	미끈가지(냉동)	FROZEN NEMACYSTUS DECIPIENS	A1102200000000020000
	볏붉은잎(건조)	DRIED HIME MODOKI	A1102700000000010000
	볏붉은잎(염장)	SALTED HIME MODOKI	A1102700000000050000
	옥덩굴(냉장)	FRESH CAULERPA OKAMURAI(E)	A1102800000000040000
	옥덩굴(염장)	SALTED CAULERPA OKAMURAI(E)	A1102800000000050000
	바다포도(건조)	DRIED SEA GRAPE	A11028Z0000000010000
	바다포도(염장)	SOLTED SEA GRAPE	A11028Z0000000050000
	부리붉은잎(건조)	DRIED CALLOPHYLLIS RHYNCHOCARPA	A1102900000000010000
	세모가사리(건조)	DRIED MAFUNORI	A1103000000000010000
	WHITE KIRINSAI해조(건조)	DRIED SEAWEED WHITE KIRINSAI	A11ZQ000000000010000
	MACROSYSTIS해조(건조)	DRIED SEAWEED MACROSYSTIS	A11ZR000000000010000
	큰실말(냉동)	FROZEN POTAMOGETONACEAE	A11ZS000000000020000
	큰실말(냉장)	FRESH POTAMOGETONACEAE	A11ZS000000000040000
	큰실말(염장)	SALTED POTAMOGETONACEAE	A11ZS000000000050000
	코토니(건조)	DRIED SEAWEEDS COTTONII	A11ZT000000000010000
	실말(건조)	DRYING POTAMOGETONACEAE	A11ZU000000000010000
	스피노잠(건조)	**DRIED SPINOSUM**	A11ZV000000000010000
	쇠미역(건조)	DRIED SEERSUCKER	A11ZW000000000010000
	구슬말(건조)	DRIED Nostoc flagelliforme	A11ZX000000000010000
	감태(건조)	DRIED SEA TRUMPET	A11ZY000000000010000
	갈파래(건조)	DRIED SEA LETTUCE	A11ZZ000000000010000
동물성 (파충류 및 양서류)	식용자라(냉동)	FROZEN FRESHWATER TORTOISES	B0301010000000020000
	식용자라(냉동,탈갑)	FROZEN FRESHWATER TORTOISES	B0301010000000020043
	식용자라(활)	LIVE FRESHWATER TORTOISES	B0301010000000070000

자료: 수감기관 자료 재구성